



통권 488호

2024

04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월 2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가 열려, 지난 2월 정기전기이사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그리고 이사과 감사 유임에 대해 인준이 이루어졌고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 기사 3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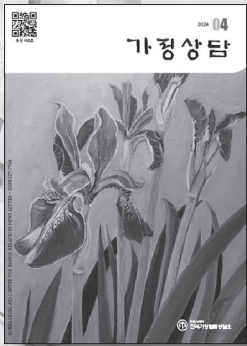


곽배희 소장은 지난 3월 6일 상담소를 방문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부부와 게스트 아예렛 라진 베티 오르 이스라엘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 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 : 청렴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렴 : (염)치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통계 - 가정법원 출장
- 10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소송구조 분석 ② - 양육비
- 20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③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59
- 25 • 가정폭력상담실
- 27 • 어떻게 할까요
- 29 • 좋은 책
 - 박물관에서 · 서성이다
- 30 • 결혼과 인생(237) 영화 이야기
 - 말 없는 소녀 _ 김용언
- 32 • 현장실습 소감문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상담소의 역사가 곧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한 발 더 나갈 수 있기를

상담소의 구성원으로 평생을 보내며 상담자로서 잊을 수 없는 내담자의 사연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지만 이와 더불어 역사적인 가족법 개정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던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원하던 결론에 이르렀던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가정 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인 상담소는 올해 창립 68주년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담소의 발자취는 상담소에서 발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1988년),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1992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2009년),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2009년)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소의 역사와 가족법 개정운동의 흐름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선생님은 1948년 마련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이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여 남녀차별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들을 누구보다 앞서 지적했으며, 창설자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1956년 상담소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상담소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호주제 폐지였고 17차에 이르는 가족법 개정입니다. 가족법의 문제는 상담 현장에서 실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담자들과 그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한 가정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현행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부조리한 관습이 그대로 투영된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았기에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률구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정문제의 근본적 요인들을 해결하려면 가족법 개정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도 필요했습니다.

상담소의 자료집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철폐나 호주제 폐지를 위한 과정에서 상담소에 전해진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항의 편지들이 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가족법 개정운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담소 구성원이나 가족법 개정운동에 나선 이들을 이혼을 조장하고 인륜을 무너트리는 가정 파괴범이나 패륜 집단으로 규정하고 동성동본 금혼규정이나 호주제가 없어지면 곧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사회는 혼란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호주제가 없어지고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관념적 이념으로 현실의 삶을 왜곡시키는 법, 특히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을 개정하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거나 지나치게 목소리만 큰 방향의 여론을 의식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될 법의 개정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후퇴시키는 일인지를 저는 오랜 기간 가족법 개정운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

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서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졌고, 얼마 전 법무부 가족법특별위원회에서는 차제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의 변화 그리고 국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 이 법의 개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상담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정서와 문화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되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입법례와 시대의 변화, 정서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근친혼에 대한 금혼 조항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족 범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에서는 지구촌, 세계화라는 언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배경, 사회 전반 인식의 변화 등을 폭 넓게 보고 그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엄격하게 테두리를 만들고 정해 놓지 않으면 국민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벗어날 것이라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신분행위에 있어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농경사회 대가족 체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4촌도 존재하기 어려운 가족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현실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반영하는 가족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의 방향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 통계 |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2023년도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통계

2023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5,604건 상담

2011년 출장 상담 시작 후 2023년까지 총 91,645건 상담

민원인들에게 관련 법률규정 및 구체적인 절차 등 상세한 상담 제공
소장, 답변서, 보정서 등 서류 작성도 도와

상담 내용은 유언·상속, 이혼, 가족관계등록부 순으로 많아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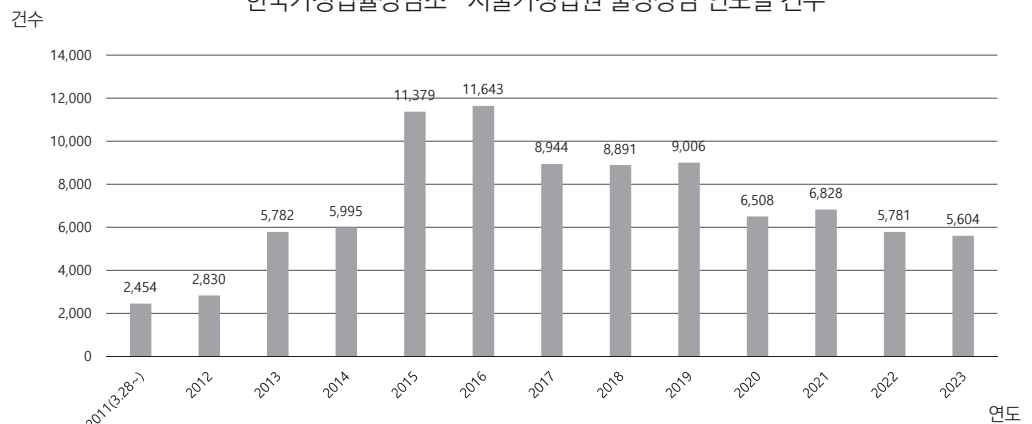
남녀 모두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많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한 민원인 중 법률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했다. 2011년 3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본 상담소의 출장상담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총 2개소의 상담실에서 본 상담소 상담위원과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첫해인 2011년에는 상담건수가 2,454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830건, 2013년에는 5,782건, 2014년에는 5,99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민원인들의 상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2015년에는 상담실 1개소를 추가로 오픈하였다. 이에 상담건수는 2015년 11,379건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2016년 11,643건, 2017년 8,944건, 2018년 8,891건, 2019년 9,006건, 2020년 6,508건, 2021년 6,828건, 2022년 5,781건, 2023년 5,604건의 상담을 기록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연도별 건수



1. 연도별 상담건수

2011년 3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총 91,64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몇 년 간 상담건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상담소에서는 여전히 연간 5천 건 이상 꾸준히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법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연도별 상담건수 분석표 〉

연도	총건수	월평균
2011(3.28~)	2,454	273
2012	2,830	236
2013	5,782	482
2014	5,995	500
2015	11,379	948
2016	11,643	970
2017	8,944	745
2018	8,891	741
2019	9,006	751
2020	6,508	542
2021	6,828	569
2022	5,781	482
2023	5,604	467
합계	91,645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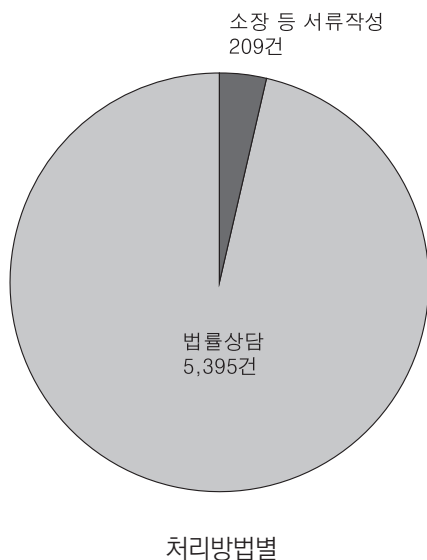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상담을 처리방법별로 살펴보면, 총 5,604건 중 법률상담을 한 경우는 5,395건(96.3%)이었고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민원인들에게 소장, 신청서, 답변서, 보정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한 경우는 209건(3.7%)이었다.

여의도에 위치한 본 상담소 전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55,684건이었고, 그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529건으로 1.0%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한 상담 건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총 5,604건 중 209건으로 3.7%를 차지해 민원인들에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접수를 앞둔 민원인들의 대서 요청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상담소의 법률구조를 안내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도록 처리하였다.

2. 사건처리별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소장, 신청서, 답변서, 보정서 등 다양한 서류 작성 도와
민원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해



〈 처리방법별 분석표 〉

처리방법	총건수	%
법률상담	5,395	96.3
소장 등 서류작성	209	3.7
합계	5,604	100

3. 내담자 특성별

1) 남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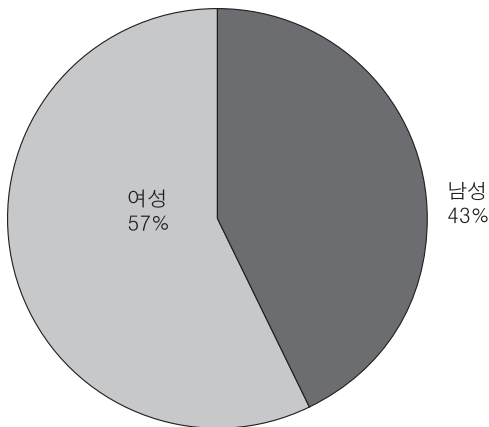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아

여 성	3,195 명	(57.0%)
남 성	2,409 명	(43.0%)
합 계	5,604 명	(100.0%)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3,195명

(57.0%), 남성이 2,409명(43.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았다.

〈연령별 분석표〉



연령	여 성		남 성		합 계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10대	14	0.4	17	0.7	31	0.6
20대	128	4.0	63	2.6	191	3.4
30대	343	10.7	199	8.3	542	9.7
40대	648	20.3	412	17.1	1,060	18.9
50대	713	22.3	577	24.0	1,290	23.0
60대	754	23.6	638	26.5	1,392	24.8
70대	472	14.8	381	15.8	853	15.2
80대 이상	107	3.3	117	4.9	224	4.0
미 상	16	0.5	5	0.2	21	0.4
합 계	3,195	100	2,409	100	5,604	100

2) 연령별

남녀 모두 60대, 50대, 40대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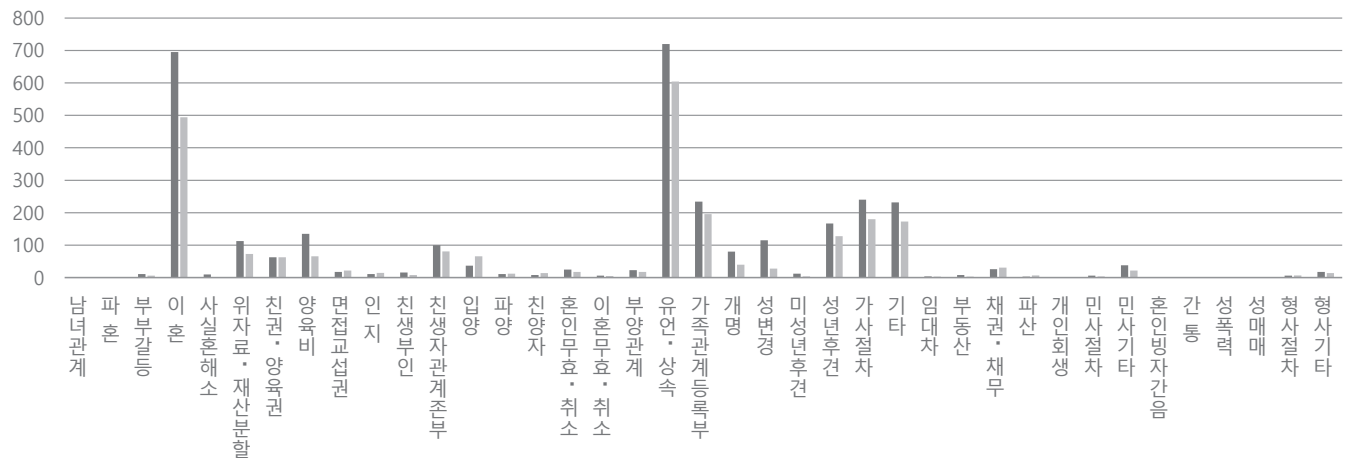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6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22.3%), 40대(20.3%), 70대(14.8%), 30대(10.7%), 20대(4.0%), 80대 이상(3.3%), 10대(0.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가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24.0%), 40대(17.1%), 70대(15.8%), 30대(8.3%), 80대 이상(4.9%), 20대(2.6%), 10대(0.7%) 순으로 나타났다.

4. 사건내용별

유언·상속, 이혼, 가족관계등록부, 가사절차
순으로 상담 많아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유언·상속으로 총 5,604건 중 1,324건(23.6%)에 달했다. 다음은 이혼(1,189건, 21.2%), 가족관계등록부(430건, 7.7%), 가사절차(420건, 7.5%), 가사기타(405건, 7.2%), 성년후견(295건, 5.3%), 양육비(201건, 3.6%), 위자료·재산분할(186건, 3.3%), 친생자관계존부(181건, 3.2%), 성변경(143건, 2.6%), 친권·양육권(126건, 2.2%), 개명(120건, 2.1%), 입양(103건, 1.8%) 순이었다.

사건내용별



〈 사건내용별 분석표 〉

사 건 내 용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5,401건 (96.4%)	남녀관계	-	-	1	0.0	1	0.0
	파 혼	2	0.1	-	-	2	0.0
	부부갈등	11	0.3	6	0.2	17	0.3
	이 혼	695	21.8	494	20.5	1,189	21.2
	사실혼해소	10	0.3	2	0.1	12	0.2
	위자료 · 재산분할	113	3.5	73	3.0	186	3.3
	친권 · 양육권	63	2.0	63	2.6	126	2.2
	양육비	135	4.2	66	2.7	201	3.6
	면접교섭권	18	0.6	22	0.9	40	0.7
	인 지	11	0.3	15	0.6	26	0.5
	친생부인	16	0.5	8	0.3	24	0.4
	친생자관계존부	100	3.1	81	3.4	181	3.2
	입양	37	1.2	66	2.7	103	1.8
	파양	11	0.3	12	0.5	23	0.4
	친양자	8	0.3	14	0.6	22	0.4
	혼인무효 · 취소	25	0.8	18	0.7	43	0.8
	이혼무효 · 취소	6	0.2	5	0.2	11	0.2
	부양관계	23	0.7	18	0.7	41	0.7
	유언 · 상속	720	22.5	604	25.1	1,324	23.6
	가족관계등록부	234	7.3	196	8.1	430	7.7
	개명	80	2.5	40	1.7	120	2.1
	성변경	115	3.6	28	1.2	143	2.6
	미성년후견	12	0.4	4	0.2	16	0.3
	성년후견	167	5.2	128	5.3	295	5.3
	가사절차	240	7.5	180	7.5	420	7.5
	기타	232	7.3	173	7.2	405	7.2
민 사 157건 (2.8%)	임대차	4	0.1	3	0.1	7	0.1
	부동산	8	0.3	3	0.1	11	0.2
	채권 · 채무	26	0.8	31	1.3	57	1.0
	파산	3	0.1	7	0.3	10	0.2
	개인회생	1	0.0	1	0.0	2	0.0
	민사절차	6	0.2	4	0.2	10	0.2
	민사기타	38	1.2	22	0.9	60	1.1
형 사 46건 (0.8%)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력	1	0.0	-	-	1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6	0.2	7	0.3	13	0.2
	형사기타	18	0.6	14	0.6	32	0.6
합 계		3,195	100	2,409	100	5,604	100

남녀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은 총 3,195건 중 유언 · 상속이 720건(2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혼(695건, 21.8%), 가사절차(240건, 7.5%), 가족관계등록부(234건, 7.3%), 가사기타(232건, 7.3%), 성년후견(167건, 5.2%), 양육비(135건, 4.2%), 성변경(115건, 3.6%), 위자료 · 재산분할(113건, 3.5%), 친생자관계존부(100건, 3.1%), 개명(80건, 2.5%), 친권 · 양육권(63건, 2.0%), 민사기타(38건, 1.2%), 입양(37건, 1.2%) 순이었다.

남성은 총 2,409건 중 유언 · 상속이 604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혼(494건, 20.5%), 가족관계등록부(196건, 8.1%), 가사절차(180건, 7.5%), 가사기타(173건, 7.2%), 성년후견(128건, 5.3%), 친생자관계존부(81건, 3.4%), 위자료 · 재산분할(73건, 3.0%), 양육비 · 입양(각 66건, 각 2.7%), 친권 · 양육권(63건, 2.6%), 개명(40건, 1.7%), 채권 · 채무(31건, 1.3%), 성변경(28건, 1.2%), 면접교섭권 · 민사기타(각 22건, 각 0.9%) 순이었다.

김진영 상담위원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분석

-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이 가장 많아
-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아
-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는 과거 양육비 인정 어려워

2023년 9월 여성가족부의 발표¹⁾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2022년 약 149만 4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6.9%에 달했다. 그중 여성 한부모 가구는 112만 9천 가구로, 한부모 가구의 75.6%에 달했으며, 남성 한부모 가구의 경우 36만 5천 가구(24.4%)로, 여성 한부모가 남성 한부모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2022년 미혼부모는 26,021명이며, 이중 미혼모는 약 2만 132명, 미혼부는 5천 889명으로, 미혼모의 경우 미혼부에 비하여 3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다.²⁾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

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양 의무자는 본인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자녀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부 관계의 효력은 사라지더라도 친자 관계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자녀에 대한 의무는 현존하므로 부모의 의무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중에서 15.0%만이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받은 적이 없거나 과거에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하는 한부모는 80.7%에 달하였다.³⁾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약 24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9만 원)과 비교하여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p. 9-10, 2023.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2) <2022년 미혼모 및 미혼부 인구>

(단위 : 명, %)

2022년	계(명)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미혼모	20,132	0.8	16.6	35.1	36.2	11.3
미혼부	5,889	0.0	5.0	23.7	42.0	29.3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p.10.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p.1-7, 2022. 5. 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절반 정도(58.8%)의 수준인 점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전체 한부모가정의 54.4%인 것만 보아도 한부모가정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미성년자녀의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양육 환경이 무너지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부모들이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국가와 사회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운영에 힘써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정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특화하였고, 2015년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서비스수탁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법률구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3년에 본소에서 진행한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사건 87건을 분석하였다.⁴⁾

I.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의 특징

1. 가족형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은 대부분 한부모가족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혼모가족, 비혼부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괄한다. 2023년의 경우 모자가족이 62%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1%, 비혼모가족이 15%를 차지했다. 조손가

족의 사건도 2건 있었다. 2023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서와 같이 모자가족이 부자가족의 3배에 달하였다.

〈표 1〉 가족 형태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사건 수 (비율)
모자가족	54	62
부자가족	18	21
비혼모가족	13	15
비혼부가족	-	-
조손가족	2	2
합계	87	100

2. 연령 및 지역

1) 신청인 및 상대방 특성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을 성별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이 69명(79%), 남성이 18명(21%)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신청인 42%, 상대방 4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청인의 경우는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는 50대(24%), 30대(22%), 20대(9%)의 순이었다.

〈표 2〉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단위 : 건, %)

구분	신청인		상대방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20대	7	8	8	9
30대	24	28	19	22
40대	37	42	38	45
50대	17	20	22	24
60대	1	1		
70대	1	1		
합계	87	100	87	100

4) 2023년 본소에서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건은 총 132건으로 이 중 전국업무협력기관에서 연계한 사건을 제외하면 74건이었다. 본 조사 연구에서 분석한 양육비관련 소송구조사건(87건)은 양육비 및 이행강제관련 청구(74건)와 인지 및 양육비 등 청구, 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의 응소 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2) 지역

본소는 양육비 관련 사건의 소송구조를 전국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본소가 지원한 소송구조 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4건, 서울 23건, 경상 23건, 인천 11건, 전라 4건, 충청 2건 등의 순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7%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 지역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서울	23	26
경기	24	28
인천	11	13
강원	-	-
충청	2	2
경상	23	26
전라	4	5
제주	-	-
전체	87	100

II.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양육비 소송구조는 크게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과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으로 나뉜다.

2023년 양육비 청구 사건은 26건(30%),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61건(70%)이 진행되었으며, 87건 중 51건(59%)의 사건이 종결되었다(양육비 청구 18건, 양육비 이행확보 33건).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조정·결정 40건, 취하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본안 소송 지원 이외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인 본안 외 소송을 차례로 지원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 판결 이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구조절차를 수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지속해 지원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같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양육비청구뿐만 아니라 양육비의 증액, 과거 양육비의 청구,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지급이행을 위한 소송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 소송구조 사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양육비 청구 (26건, 30%)	종결 (18)	승소 · 조정	13	50
		기각	-	-
		각하	-	-
		이송	-	-
		소취하	5	19
		신청		
	진행 중		8	31
	합계		26	100
양육비 이행확보 (61건, 70%)	종결 (33)	결정	27	44
		기각	-	-
		각하	1	2
		이송	1	2
		취하	4	6
	진행 중		28	46
	합계		61	100

1. 양육비 청구 사건

1) 개요

양육비 청구 사건은 2023년 양육비 등 소송구조 사건 87건 중 2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양육비 등 청구 사건에는 비혼모가 인지하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의 성본 계속 사용(또는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 양육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과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등의 증가로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는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를 하자 비양육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해 응소하는 경우, 성년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가족/혼인 형태별

2023년에 진행된 26건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가족 형태 별로 보면, 모자가족 16건(61%)이 가장 많았으며, 비혼모 가족 8건(31%), 부자가족 2건(8%)의 순이었다.

〈표 5〉 가족 형태별 본안 소송 건수
(단위 : 건, %)

구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인지 및 양육비청구	-	-	6	-	-
양육비 등 청구	16	2	2	-	-
합계	16 (61)	2 (8)	8 (31)	-	-

혼인/이혼 형태를 보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가 16건(61%),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2건(8%) 그리고 비혼 상태였던 경우가 8건(31%)이었다.

〈표 6〉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단위 : 건, %)

혼인/이혼 형태	비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합계
사건 수	8	16	2	26
비율	31	61	8	100

양육비 청구 사건은 장래·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증액 신청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비혼모의 경우 인지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성과 본 계속 사용 신청 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양육비 청구와 함께 비양육친이 친권자인 경우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하거나, 자녀의 성과 본을 비양육자의 성과 본에서 양육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청구 또는 이행강제신청 중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이나 양육자 변경청구에 대한 응소도 포함되었다.

양육비 청구 사건 중 종결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21건(소취하 5건 제외)으로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은 〈표 7〉과 같다. 의뢰인이 비혼인 경우가 6건, 상대방과 협의이혼한 경우가 13건, 재판상 이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청구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양육비 심판청구 11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양육비 증액심판청구 5건(24%), 인지 등 4건(19%),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심판청구에 대한 응소 1건(5%)의 순이었다. 인지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다. 양육비증액청구를 한 경우(5건)에는 모두 협의이혼을 한 경우였다. 양육비증액청구는 물가상승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의 증가, 비양육자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다. 아울러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협의이혼에 필수적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혼협약에 더 중점을 두어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를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점도 협의이혼 후 양육비증액청구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표 7〉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단위 : 건, %)

청구 유형	합계	비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인지 등	4 (19)	4 (67)	-	-
양육비	11 (52)	2 (33)	7 (54)	2 (100)
양육비 증액	5 (24)	-	5 (38)	-
양육비 감액 응소	1 (5)	-	1 (8)	-
합계	21 (100)	6 (100)	13 (100)	2 (100)

3) 양육비 청구 형태 및 인정 금액

양육비 등 청구사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경우가 14건(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한 경우가 4건(19%),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경우가 2건(9%)의 순이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감액청구에 대한 응소도 1건(5%)이 있었다.

〈표 8〉 양육비 청구 형태

(단위 : 건/%)

구분	합계	종결	진행 중
장래양육비 청구	14 (67)	7 (50)	7 (50)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2 (9)	2 (100)	0
과거양육비 청구	4 (19)	4 (100)	0
양육비감액청구에 대한 응소	1 (5)	1 (100)	0
합계	21 (100)	14 (67)	7 (33)

다음으로 양육비 청구사건 중 승소 혹은 조정, 화해권고를 통해 종결된 13건의 양육비 청구금액과 판결(조정) 금액을 살펴보면, 장래양육비에 대한 청구(9건) 중 6건은 청구금액의 50% 이상이 장래양육비로 인정되었다. 이 중에는 화해권고를 통해 100% 청구금액이 인정된 경우(사례 1), 재판 도중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청구금액 이상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도 있었다.⁵⁾

한편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6건)의 경우 4건은 청구금액의 50% 이상이 인정되었고, 청구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각 1건이었다.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은 건은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혼한 경우이다. 이 사례는 2014년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녀 3명의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혼하였으나, 2023년 양육비청구 당시 자녀 1명은 성년이 되었고, 2명의 자녀에 대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장래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씩 인정되었다. 양육비인정금액이 50%를 못 미친 사례는 장래 양육비의 증액청구를 한 경우로 2021년 협의이혼 당시 2명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2년 뒤에 자녀(9세, 8세)에 대해 1인당 70만 원으로 청구하였으나 각 30만 원씩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양육비 청구 및 인정 금액

(단위 : 만원, %)

구분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	인정 금액	인정 비율	청구 금액	인정 금액	인정 비율
장래양육비 청구 (7건)	50	60	120			
	200	100	50			
	70	30	43			
	50	40	80			
	160	100	63			
	140	40	29			
	80	80	100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2건)	150	80	53	5,530	3,000	54
	80	30	38	3,000	0	0
과거양육비 청구 (4건)				5,640	3,500	62
				4,700	4,700	100
				1,500	1,500	100
				9,385	4,000	43

<사례 1>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으나 화해권고를 통해 일시금 지급 결정

청구인(남, 30대)은 상대방(여, 30대)과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2010년생)을 두었으나, 2011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은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학생으로 소득이 없었으나, 현재는 자영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소는 청구인을 도와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직접지급명령 등의 소송구조를 수행해왔다. 본 건의 경우 이혼 후 12년이 지나며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 산정한 양육비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부족하여,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양육비증액을 청구하였다.

5) 이 사건은 비혼모(여, 30대)가 생부(남, 30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한 사례로 재판 중 생부가 자를 임의인지하고 재판과정 중에 협의하여 양육비를 청구금액(50만원)보다 더 지급(60만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일시금 35,000,000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그 외에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사례 2>

양육비채권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미지급 양육비 전액 인정

청구인(여, 50대)은 상대방(남, 50대)과 1995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남, 1995년생)를 두었으나, 2000년 성격차이로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2000.2.부터 2015. 9. 까지 매월 자녀 양육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혼 이후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자녀는 이미 장성하여 성년에 이르렀지만,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길 바라는 마음에 과거 양육비 47,000,000원(25만 원 x 188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된 양육비채권이 일부 있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양육비 전액을 청구 한 후 상대방을 설득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사건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청구액 47,000,000원이 모두 인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다.

4) 소송 기간

승소·조정·화해권고 등으로 종결된 양육비 청구 사건 13건의 소송 기간은 1~3개월 3건, 4~6개월 9건, 7~9개월 1건으로 나타났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1) 개요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2023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 중 61건(70%)이었다.

가족 형태별로 보면 모자가족의 신청이 38건(63%)로 가장 많았으며, 부자가족이 16건(26%), 비혼모 가족이 5건(8%), 조손가족이 2건(3%)이었다. 모자가족(비혼모가족포함)이 부자가족의 약 3배에 달했다.

〈표 10〉 가족 형태별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건수

(단위 : 건, %)

구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전체	38 (63)	16 (26)	5 (8)	0	2 (3)

2) 이행확보 유형별 사건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61건)에는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사건(40건)과 이행명령 등 이외의 이행확보 사건(20건), 양육비직접지급명령결정에 대한 항고의 응소사건(1건) 등이었다.

(1)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사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이행명령신청은 28건(70%), 감치신청 10건(25%), 과태료신청 2건(5%)이었으며, 이중 이행명령 11건, 감치 4건, 과태료 1건이 종결되었다.

〈표 11〉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사건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이행명령	28 (70)	11 (39)	17 (61)
과태료	2 (5)	1 (50)	1 (50)
감치	10 (25)	4 (40)	6 (60)
합계	40 (100)	16 (40)	24 (60)

이행명령 소송구조 사건의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0건(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건(18%),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각 4건(14%)이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도 2건(7%) 있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씩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양육비지급이행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12〉 이행명령 소송구조 사건 미지급 양육비 액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300만 원 미만	3	11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	14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	14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0	36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	18
5,000만 원 이상 10,000만 원 미만	2	7
10,000만 원 이상	-	-
합계	28	100

<사례 3>

9천만 원의 미지급양육비 중 일부인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행명령 결정

청구인(여, 40대)은 상대방(남, 40대)과 2007년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19세), 장남(18세), 차남(12세), 차녀(10세)를 두었으며, 2016년 조정이혼을 하였다.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상대방은 매월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대방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양육비가 90,660,590원에 달하여 청구인은 이행명령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년에 이른 장녀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녀인 장남, 차남, 차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20개월에 나누어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내렸다.

미지급양육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이행명령결정이 내려진 양육비 이외의 미지급 양육비가 면책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지급양육비가 일시에 지급하기에 매우 큰 액수이기에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미지급양육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명령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이행명령결정 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이행강제수단인 감치나 과태료 신청을 하게 된다.

종결된 과태료 사건의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되었다. 4건의 종결된 감치 신청의 경우 각각 감치 14일 결정, 감치 15일 결정, 감치 20일 결정, 신청취하 등으로 종결되었다. 감치신청의 취하된 건은 감치 결정 후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 8회분 중 6회분을 지급하였기에 의뢰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표 13〉 이행명령 불이행에 기한 과태료, 감치 종결상황

구분	종결 내용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결정
감치 신청	감치 14일 결정
	신청취하 (감치 결정 후 미지급 8회분 중 6회분 지급)
	감치 15일 결정
	감치 20일 결정

(2) 강제집행 등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사건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건(35%), 직접지급명령 사건 6건(3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4건(20%), 일시금지급명령, 재산명시, 채권압류해제 등이 각 1건이 있었다.

〈표 14〉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사건

(단위 : 건, %)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직접지급명령	6 (30)	5	1
일시금지급명령	1 (5)	-	1
재산명시	1 (5)	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 (35)	7	-
채권압류해제	1 (5)	-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4 (20)	4	-
합계	20 (100)	17 (85)	3 (15)

(가) 직접지급명령 현황 및 결과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

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는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장래 양육비에 대한 것으로 양육비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를 직접 제3채무자인 사용주가 근로자(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종료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2023년 직접지급명령은 6건 신청되었고, 종결된 5건은 모두 인용결정 되었다.

(나)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다. 재산명시는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절차에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비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이다. 2023년 소송구조 사건 중 재산명시 1건이 신청되었으나 송달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리고 강제집행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7건이었으며 모두 인용되었다. 그러나 인용 결정 이후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여 집행해제 및 추심포기서(채권자취하서)를 제출한 사례가 1건 있었으며, 이와 달리 채무자 잔고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없어 추심 불가한 경우도 2건이 있었다.

전술한 양육비이행명이나 감치, 채권압류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하기 위하여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4건 모두 인용결정 되었다.

〈표15〉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종결 현황

(단위 : 원)

사건 분류	미지급 양육비	종결 현황
재산명시 (1건)	36,370,000	각하(송달불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건)	2,568,800	인용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에 따른 집행해제 및 추심포기서 (채권자취하서) 제출
	11,100,000	인용
	44,743,698	인용
	12,650,000	인용
	8,700,000	인용 -채무자 잔고 최저생계비 미달로 추심불가
	18,258,866	인용
	16,704,500	인용-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없어 종결처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4건)	15,600,000	인용
	18,000,000	인용
	51,000,000	인용 위자료 미지급 4천만 원 양육비 미지급 1천 1백만 원
	44,743,698	인용

III. 소결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되고 교육 여건도 취약하게 되며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정에 대한 논의와 촉구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논의의 일부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개정되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 개정법률에 따르면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의 불이행만으로 위 제도들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포될 대통령령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나 법률개정은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본소의 소송구조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육비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육비관련 제도와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양육비이행법 제13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조회 서비스를 양육비 채권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청가능 하도록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고의적인 재산 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회기 이상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양육비이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특히 상담현장의 실무례를 볼 때,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어 이행명령 신청만이 양육비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행명령신청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인 과태료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액수는 1천만 원 이하에 불과해 평균적인 양육비 채무 미지급 합계액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여도 이는 국고에 귀속되는 되는 것으로, 결국 양육자에게는 직접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지급 능력만을 낮출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육비지급 능력이 있는 양육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율을 낮출 수 있는 심리적 강제가 될 수 있다.⁶⁾

다섯째, 현행법상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감치명령결정이 실무에서는 잘 내려지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경우 감치명령결정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위한 조건을 불충족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감치명령결정을 받기 위해 전단계인 이행명령결정까지도 신청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다시 감치신청과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그러하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려면 감치명령결정 이후 다시 1년 동안 양육비가 미지급되어야 한다. 결국 이 오랜 기간 미성년 자녀는 열악한 양육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양육비 채권자들은 제도의 유명무실까지 언급하기도 한다. 양육비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미성년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가 공백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양육비가 미지급된 총기간과 횟수, 미지급양육비 액수, 채무자의 고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고소의 전제조건으로 감치명령결정 이후 1년여 기간의 양육비 미지급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감치명령이 선행되지 않아도 양육비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심리적 강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강제집행과 배당의 경우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금채권 등으로 이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확보는 미성년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권 역시 위의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은경 상담위원

6) 현소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제고를 위한 몇가지 제언”, 「사법」 제1권 제64호, 사법발전재단, 2023, p.198.

특별기획

가정폭력예방 지침* 등지교실 VIII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3)

II. 주제 및 내용

■ POINT

제 1 강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I. 서론

■ INTRODUCTION

1강에서는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인 성격장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적 어려움을 우리 모두 조금씩은 갖고 있다. 우리는 성격장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조금씩은 성격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가 나를 돌아보고 주변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성격적 어려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격이란 자신, 중요한 타인, 환경에 관한 사고나 지각에서 비교적 지속해서 보이는 패턴이다. 성격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 수립의 근간이 되고 타인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로써, 삶의 만족감에 있어 중요하다. 타인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노출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뇌과학에서 성격의 70~80%는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봐도 조상의 성격과 후손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런 타고난 측면이 있어서 성격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후천적인 영향이 아예 없는 것 역시 아니다. 내가 태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등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등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등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어난 성격적 특성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반응할 때 긍정 또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적절하게 다루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여지는 충분하다. 스티븐 콕이라는 학자의 유명한 저작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이들에 관한 특징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삶은 건강한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좋은 습관을 확인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면, 즉 타고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에 건강한 습관을 배치하게 되면 삶은 달라질 것이다.

II. 본론

성격장애란 성격이 완고하고 비적응적이어서, 개인의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에 유의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성격은 자신, 중요한 타인, 환경적인 주변 상황들에서 일관성을 갖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패턴화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하고 주로 아동 및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성인기 동안 지속하다가 중년 또는 노년기에 다소 감소한다.

성격장애는 이를 식별하는 공통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장애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지(생각)가 있다. 생각 자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생각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성 여부를 검증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생각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고 자신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들과 갈등을 겪기 쉽다. 타인에 대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찮은 사람이야.’와 같이 생각하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별일도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인격이 훼손당했다고 느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정동(감정)이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은 무드(mood), 기분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을 정동(affection)이라고 한다.

별일 아닌데도 과도하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맥락 없이 욕하는 감정표현은 타인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 남들은 기쁜 일이 있어서 웃고 즐거워하는 분위기인데 혼자만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남들이 봤을 때 감정 상태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이다.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께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면 마치 십년지기처럼 친밀해지는데 그 이후부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양상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

마지막으로 충동 조절이다. 계속해서 물건을 사거나 사치를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 등도 성격적 어려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인지, 정동, 대인관계, 충동 조절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한다면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례와 함께 정신장애의 각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A군(cluster A) 성격장애

의심이 많고 기괴하고 마술적인 성격 유형이다.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으로 대표되는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계에서 고립되고 제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분열성 성격장애, 그리고 마술적인 사고와 기괴한 지각경험을 하는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다.

① 편집성 성격장애는 의심이 많고 타인이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이라는 생각에 항상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러한 성격장애는 주변인의 성실성과 신용을 의심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 평소에도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의 숨겨진 의도는 뭘까 생각하며 부풀려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②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모습이 많다. 이런 유형은 이성에 관한 관심이 없고 타인과 협업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과만 즐거움을 추구하는 때도 있다. 굉장히 냉담하고, 고립되어 있고, 웃고 우는 등의 감정표현을 하지 않고, 타인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한다.

③ 분열형 성격장애는 행동이 괴상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때도 있다. 밖에서 나는 소리를 자신을 향한 음모로 판단하는 피해의식, 관계 망상적 사고를 보이거나, 괴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의심이 많은 편집적인 사고로도 이어진다.

(2) B군(cluster B) 성격장애

극적이고 변덕스럽고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인 성격 유형이다. 지나치게 연극적이고 과시적인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도덕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극도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보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다.

- ① 경계선 성격장애
- ② 연기성 성격장애
- ③ 반사회적 성격장애
- ④ 자기애성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에는 타인에게 해악을 많이 끼치는 성격장애가 많이 포진해 있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다. ‘경계’란 현실과 현실 아닌 것, 좋은 것과 싫은 것, 이상화와 가치절하, 선과 악의 경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극과 극이 경계를 사이로 수시로 교차한다. 이 유형은 대인관계나 자아상의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타인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유형과 이성 관계를 맺거나 결혼생활을 하게 될 때 경계선 성격장애

는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한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떠나려고 할 때는 자해를 하거나 자살 위협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감이 혼란스럽고 상대가 자신을 떠나려는 것에 대한 유기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충동이 심해 심한 사치를 부리거나, 폭식하거나, 과속 운전을 하거나, 죽을 의도가 없이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가 심해지면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발현되는 해리성정체감장애 혹은 다중성격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둘째, 연기성 성격장애는 과도한 감정표현과 관심 끌기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기에,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 유혹을 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은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표현을 자주 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목하다가 신경을 다른 곳에 쓰게 되면 가뜰이나 낮은 자존감이 손상되면서 상처받는다. 동시에 어떻게든 타인이 다시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다.

셋째,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사회적 질서나 규범을 무시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타인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도구나 부품으로 생각한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 유형은 본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타인을 해코지하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져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간혹 누구보다 잘 공감하는 듯 보일 때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실제 공감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넷째,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한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로 인식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를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주면 아이는 자신을 사랑스럽고 괜찮은 존재로 인식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한편, 공갈빵처럼 자아를 부풀리게 된다. 한마디로 왜곡된 과도한 자기애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항상 과대 자기의 이런

에는 항상 열등한 자기가 숨어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지 못하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숭배해주기를 원한다. 과도한 찬사나 특권의식을 선호하고 착취적인 대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자신이 한 실수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3) C군(cluster C) 성격장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경직된 성격 유형이다. 거절에 극도로 예민한 회피성 성격장애, 자기 스스로 선택도 책임도 지지 못하는 의존성 성격장애,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자기만의 틀에 갇혀 있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다.

- ① 회피성 성격장애
- ② 의존성 성격장애
- ③ 강박성 성격장애

첫째, 회피성 성격장애의 유형은 제한된 사회활동을 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낮은 자존감을 지닌다. 타인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관계 맺기를 회피하고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자신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만나길 원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신만의 공간으로 고립시켜버리는 것이다.

둘째, 의존성 성격장애는 누군가가 대신 자신을 책임져 주길 원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넘긴 타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매달린다. 인생의 중요한 모든 선택과 책임을 타인에게 모두 맡겨 버리며 타인이 충고해주고 확실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자신이 철저하

게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의존할 사람이 떠나갔을 때는 새롭게 의존할만한 사람을 찾는다.

셋째, 강박성 성격장애는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이 머릿속에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강박행동장애(OCD)가 강박적 사고와 행동으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커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 비해, 그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강박성 성격장애 역시 자신만의 기준으로 타인과 협력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은 자신이 설정한 과도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그 기준에 맞추는데 낭비하게 된다. 도덕과 윤리, 가치관에서도 자신의 틀만 생각하고 융통성이 없다.

지금까지 세 개의 큰 범주로 성격장애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성격장애는 자신이 무가치하며 쓸모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자기가 괴롭히는 우울증과는 달리, 남을 탓하는 특성을 보인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자신이 주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옳게 행동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역시 성격장애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립 50주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 회관 (3)

2007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및 입주

2008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

무수한 고비를 넘긴 건축과정 ②

새 회관을 짓기로 결정한 후 김춘봉·홍란희 이사(공동 건축위원장)와 황일인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조대연 감사, 차명희 이사장, 박배희 소장 등이 참석한 건축위원회는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약 100억 원이 드는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담소는 30년 전에도 뜻을 모아 길을 열어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여성백인회관 건축을 이루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다시 한번 뜻을 세워 새 길을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좋은 일에 함께 할 건축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구체적 모금방법으로 평당 5백만 원의 건축비를 전제로 강당, 강의실, 상담실 회원과 천만 원을 내는 두 평 회원, 5백만 원을 내는 한 평 회원 그리고 1백만 원, 1백만 원 이하 등을 정하고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는 100억 원의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부당국과 기업체에 도움을 호소하기로 의논하고 그 방법을 찾아 노력했다.

상담소가 새집을 갖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편안하게 쉬고 기댈 곳을 찾고 이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담소의 뜻과 사업에 동참하는 이들을 찾기 위해 건축위원회는 물론 상담소 임직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여성백인회관에 함께 했던 이들이 다시 한 번 이 뜻깊은 일에 동참해 주었고, 그 동안 상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던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대우전자, 삼성, 금호아시아나, SK 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복권기금의 도움과 정성이 모아져서 새 회관의 건축을 이룰 수 있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부부의 문제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행위자와 함께 피해자에게도 실천과제 부여해 서로 실천하며 관계 전반의 개선 도모

2021버1*** 폭행 / 2021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교육강좌 1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비대면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자조모임 5회(비대면 실시)
부부상담 11회 등 27회

상담기간

2021. 10. 13. ~ 2022. 4. 12.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18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 1녀(19세, 17세)가 있다. 부부는 2018년에 상호 폭력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된 바 있다. 당시 아내는 집을 나와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이 이혼을 강력하게 반대하자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고 본소에서 상담을 받던 중 재결합하였다.

2021년 1월 사건당일 남편은 안방에서 아내와 대화 중 감정이 상하여 거실로 나와 술을 먹다가 컵을 깨트렸고 이를 본 아내가 항의하자 머리로 아내의 이마 부분을 6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는데 아내도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남

편의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부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재상담위탁되었다.

부부는 재결합 이후 갈등상황이 심했다고 하면서도 이혼의사는 없었다. 부부는 혼전임신하고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직후부터 이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먼저 때리고 욕하며 남편이 막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아내는 임신과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임신하여 인생이 꼬여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매사 공격적이었다. 아내는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남편의 음주문제가 갈등요인 중 하나인데 인정하지 않으며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화 중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갈등요인이라고 하였다. 반면, 남편은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인정하지만, 아내가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자주 하고 자신의 말을 수용하지 않아 대화가 어려운 것을 힘들어하였다.

부부상담을 하면서 아내는 자신의 생각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기로 하며, 결혼과 출산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또,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노력을 하기로 하며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풀려는 지금까지의 태도도 바꾸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부부는 상담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하여 의견을 나

누고 합의점을 찾아갔다. 집을 넓혀 이사하면서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관계가 되는 전기도 마련되었다.

아내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 0점, 종결상담시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고, 남편의 감정이 이전보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완점으로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기를 꼽았다. 남편은 사건 당시와 종결상담시 모두 부부관

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하고, 아내가 이전보다 덜 예민하고 대화 노력을 보여준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보완점으로는 아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수용해주기와 시간이 흐르면 아내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면서 못마땅한 모든 점을 남편 탓으로 전가하지 않기를 바랐다. 부부는 상대방의 노력을 칭찬하고 현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3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3/21	4명	나의 강점 탐색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음주문제 집단상담	3/8	6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15	6명	음주와 트라우마	
		3/22	5명	음주와 공동의존	
		3/29	6명	음주와 회복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3/6	3명	부부갈등의 이유, 입장차이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3/13	4명	잘 사는 삶, 행복의 조건	
		3/20	3명	가정화목의 비결, 이해	
		3/27	5명	가족의 미래, 나하기 나름	
	동지교실	3/13	31명	잘 한 나를 칭찬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③ (+격려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음주문제 집단상담	3/8	16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15	15명	음주와 트라우마	
		3/22	15명	음주와 공동의존	
		3/29	14명	음주와 회복	



부모와 자녀 ① - 친자의 성, 친생자 ②

● 19세 이상의 자녀는 친양자입양은 안 되지만 성변경청구는 가능하다

Q 문 4 | 13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그 동안 아이와 남편의 성이 달라서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아이는 20세인데 지금이라도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친양자가 되려면 미성년자이어야 한다고 해서 아이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성을 바꿀 길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A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 및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 그밖에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따라서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법원에 성과 본 변경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Q 문 5 | 저는 5년 전 부모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했는데 아내는 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며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와 같이 있던 시간은 1년에 한두 번 뿐이어서 아무래도 제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를 제 등록부에 올리고 싶지 않는데 제가 거부하면 가능한지요??

A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었다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따라서 부인은 혼인기간 중 임신한 것이므로 부인이 낳은 아이는 귀하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만약 자녀가 귀하의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신용불량자였던 오빠가 지난 2월에 사망했습니다(배우자와는 이혼). 돌아가신 오빠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아들 한 명만 있는데 수소문하여 장례식에는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조카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고 저에게도 조치를 취하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는 6남매입니다. 저희들도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한 사람의 조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형제자매 상속순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6남매 중 1명이 외국(영주권자)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A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청구의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관할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먼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인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며, 3순위 형제자매들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수리가 되면 3순위자가 상속인(한정승인 상속인)이 되므로 4순위자(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은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이때 외국에 거주(재외국민, 영주권자)하는 상속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복미영 상담위원



이 책을 읽을 때 쓴 책갈피는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집어온 것이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주제로 설명을 담은 카드를 만들고 스탬프를 찍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길래, 기념장메달이며 어가 등 종류별로 스탬프를 찍어서 흐뭇하게 가져온 기억이 있다. 책상 위에 두고 요긴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백제금동대향로’, 지난 겨울 가끔 들르던 펀딩 사이트에서 백제금동대향로 미니어처 제작을 위한 펀딩을 하고 있어서 예약을 하고 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받은 것이다. 좋은 향을 구해서 피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요즘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정말 좋아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대향로를 수시로 영접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박물관 나들이는 흐뭇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고궁박물관도 좋다.

이 책 『박물관에서 · 서성이다』는 이러한 박물관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책의 지은이 박현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자이너로 30여 년간 일하고 정년퇴직했고 현재, 연필 뮤지엄 관장으로 있으면서 디자인, 문화재, 박물관 등을 주제로 글을 쓴다. 지은이의 이력을 보면서 요즘 박물관 디자인 속에 있는 다양하고 멋진 기념품들이 이러한 이들의 안목인가 궁금하기도 했다.

『박물관에서 · 서성이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박물관의 전통 문화유산을 박물관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본 “옛것은 살아있다” 그리고 디자인의 이념과 표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대정신을 반영해 왔는지

소개하는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진화하다”로 구성되었다. 모든 글이 문장은 아름답고 애정을 담은 전문가의 깊은 내공이 느껴져서 아주 좋았다.

지은이는 “박물관의 안과 밖에서 서성서성 배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역이 아닌 경계인으로 박물관 안팎을 넘나들며, ‘박물관’과 ‘디자인’을 넘어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다듬어진 내용과 문장은 그 감성과 지식이 느낌으로 전달되는 듯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인왕제색도를 설명한 ‘인왕산에 비 그치고’는 매일 인왕산을 보며 하는 퇴근길을 더욱 인상 깊게 해주었다. ‘방물장수, 박물관장수’는 어원에 대한 탐구가 흥미로웠고 마지막 ‘빛바라기’는 책의 마무리로 더 없이 근사하게 느껴졌다.

지은이는 말한다.

“즉물적인 명량함을 드러내기엔 직사광선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물체 자체가 아니라 물체와 물체 사이의 틈, 물체의 얼룩이나 영혼은 희미한 반사광 속에서 비로소 신비로워진다. 동물은 몸이 다치거나 허약해지면 동굴이나 동지로 들어간다. 어둡고 고요하다. 밝고 소란하고 분주한 곳에서는 안식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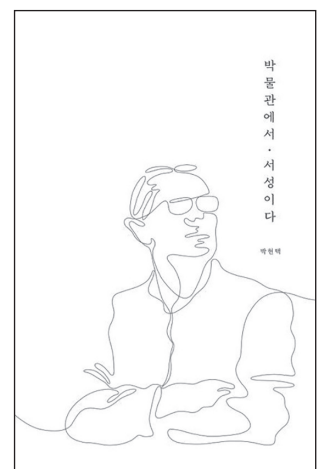
“생명체의 모든 감각은 생존 반응에서 발달한다. ‘감각’하여 ‘지각’하고,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이다. 창조적 행위는 사물과 사건의 본성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 디자인의 목적은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박물관에서 서성이다

박현택 지음

통나무, 2023(1판1쇄)



말 없는 소녀

감독 콤 베어리드

출연 캐서린 클린치, 캐리 크로울리, 앤드류 베넷



1980년대 초, 아홉 살 소녀 코오트(캐서린 클린치)는 말수가 적다. 좁은 집은 북적북적하다. 세 명의 언니, 어린 동생 하나, 그리고 곧 만삭의 엄마로부터 태어날 또 다른 아이, 알콜중독과 도박, 외도까지 밥 먹듯이 저지르는 무책임한 아빠, 연이은 출산과 가사 노동에 짓눌려 기력을 소진한 엄마.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벼운 학습장애까지 있기에, 학교에서도 코오트는 아무 말 없이 숨죽인 채 교실 한 구석을 조용히 지킨다.

엄마는 막내가 태어날 때까지 제일 얹전한 코오트를 친척 에이블린(캐리 크로울리)과 셀(앤드루 베넷) 부부에게 보내기로 결정한다. 자신이 '치워져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가 모를 리 없다. 코오트는 낯설기만 한 에이블린과 셀 부부의 집에서 잔뜩 긴장한 채 하룻밤을 보내고, 결국 매트리스 위에 소변을 지리고 만다. 하지만 에이블린은

나무라거나 놀리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차갑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보여준 다음 요리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아이는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배우고 어른들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한다. 에이블린은 처음부터 코오트에게 친절했지만, 셀은 어딘지 불편한 기색으로 코오트를 못 본 척한다.

즐거리만 보더라도 루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강머리 앤>을 연상시킨다. 다만 앤 설리는 지나치게 수다스럽고 활발한 덕분에 고요한 커스버트 남매의 집을 순식간에 들쭉서 놓으며 격렬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말 없는 소녀>의 주인공들인 코오트와 에이블린, 셀은 침묵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다만 이들이 지키는 고요함에는 몇 가지 층위가 있는데, 먼저 코오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요된 침묵이다. 가족 사이의 무심한 방치는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 코오트를 물리적으로 학대하지 않더라도, 제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학습장애에 대해 신경 써 주는 어른의 부재로 계속 방치된다거나, 도박 결과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아이가 옆에 있건 말건 욕설을 퍼붓고 분노를 터뜨리며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코오트는 이 시끄럽고 불안한 소음 속에서 눈치껏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다. 아이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칠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혼자 흐느끼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구석에 조그맣게 숨는 건 아이가 나름대로 터득한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에이블린과 셀의 집에서 코오트는 다른 침묵을 배운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언제나 그걸 기억하렴. 많은 사람이 침묵할 기회를 놓쳐서 많은 걸 잃었다.” 강요되다시피,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침묵.

영화는 코오트의 속내를 전부 말로 설명하거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세밀하게 묘사하는 대신, 코오트를 둘러싼 자연의 풍부한 변화를 화면의 중심에 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매만지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쬘며 소떼와 양떼가 먹이를 찾아 보채는 울음소리가 기분 좋게 귓가에 와 닿는 그 모든 풍경이야말로 코오트가 안정과 평화를 찾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여기가 자신이 있어도 되는 곳인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불안해하는 것이야말로 어린 시절 가장 큰 걱정과 공포의 근원이라고 할 때, 코오트는 에이블린과 선의 집에서 비로소 ‘나의 장소’이자 ‘나의 집’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이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에이블린과 선에게도 고통스러운 비밀이 있었고, 부부는 코오트를 보살피고 마땅한 사랑을 선사하면서 자신들의 쓰라린 실패의 상처까지 조금씩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말 없는 소녀〉에는 코오트의 달리기 장면이 몇 번 나온다. 초반부에 코오트가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운동장을 질주해서 담을 넘어 도망치던 뒷모습, 중반부에 선이 “너는 다리가 길어서 잘 뛰겠구나”라며 연습을 시킬 때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껏 달리면서 서서히 자신의 몸을 제어하는 능력을 배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에이블린과 선에게 셋만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자동차 뒤를 쫓아가던 질주. 아이는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또 자신을 원하는 가족을 선택할 수 없지만, 두 달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억눌린 내면을 포용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그것은 코오트에게도, 또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이블린과 선 부부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다. 말 없고 수줍은 아이의 내면이 바뀌는 순간, 세계가 달라진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동계방학을 맞아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들의 소감 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도착순으로 싣는다.

최 서 연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장실습을 통해 가족법 수업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현장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실무 경험 없이는 완전한 이론의 이해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또한 넓어졌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사회에 이렇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실습생 동기들을 보며 다양한 관점 또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장 다 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수활동을 오기 전, 저는 실무에 대한 목마름이 강했습니다. 가족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제 어떤 사유로 현실에 막연함을 느끼시는지 알고 싶었으며, 어려움이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은 처음 지원할 때부터 꼭 함께하고 싶은 활동이었지만, 실제로 상담소에서 보낸 두 달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가족법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잡혔으며, 사람에게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가정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상담소 연수를 통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조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돕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서 동 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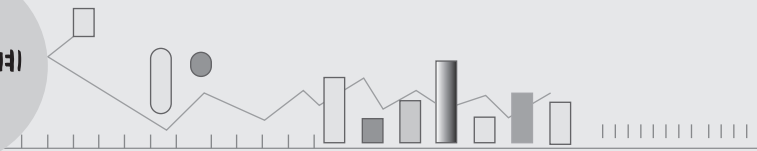
나의 연수기간은 짧았지만, 그 속엔 늘 내담자의 사연이 있었고, 삶이 있었다. 문득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구나 생각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이구나 깨닫는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에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내뱉는 한마디 말과 적어 내려가는 한 줄의 글에 담은 가치를 점검한다. 내 행동과 질문이 집단에서 어떻게 인식될지 살피게 되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언제 질문해야 할지, 질문을 참는 동안 내가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활동을 지속하며 질문은 줄어갔지만, 어디에 배움이 있는지 묻는 법을 배웠다.

김 민 서

동국대학교 법학과

실습 이전까지는 법적 문제를 오로지 법률의 문제로 보았다면, 이후에는 법적 문제가 법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부부관계 향상 공개강좌, 동지교실, 상담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모임을 참관하고 속기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상담소가 관계의 '해결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24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 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와 감사에 대해 지난 정기 전기 이사회에서 유임을 의결한 데 이어 인준이 이루어졌고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관련사진 2면)

곽배희 소장, 주한 이스라엘 대사 부부 및 이스라엘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전 위원장 맞아 간담회 가저

지난 3월 6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배우자 나오미 토르 박사가 게스트 아예렛 라진 베티 오르(Ayelet Ben Razin Bet Or) 이스라엘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전)위원장과 함께 본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한국 부임 직후인 2021년 1월 배우자 나오미 토르 박사와 함께 본소를 방문하였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며 매우 큰 지지와 유대감을 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내한한 아예렛 (전)위원장을 동행하여 본소를 방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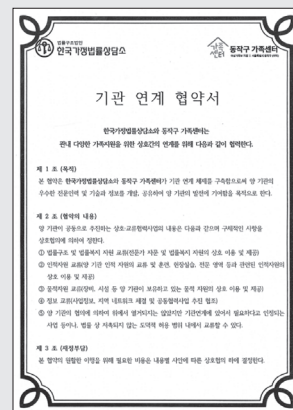
아예렛 (전)위원장은 2023년 10월에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하마스 지역의 여성폭력문제를 제

기하고 피해자를 옹호하는 옹호 단체를 이끌고 있다. 간담회에서 아예렛 (전)위원장은 전쟁범죄에 대한 우려와 활동 경험, UN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의견 및 공론화 계획과 관련 상담소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곽배희 소장은 남성에게 의해 발발한 전쟁의 피해자가 여성, 노약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옹호 활동에 대한 유대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스라엘대사관 Mr. Barak Shine 공관차석과 김미영 대사 비서,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본소와 동작구 가족센터, 관내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기관연계 협약 체결

본소는 지난 3월 5일 동작구 가족센터(센터장 박연숙)와 관내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기관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교환하였다. 본소와 센터는 이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력분야는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등 법률적 자원의 지원,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지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지원 등이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소에서 매일 진행 중인 신용회복제도 상담

본소는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해마다 매월 1회씩 신용회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에도 본소에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노숙인 등을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본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노숙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 대상으로 신용회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제도를 알리고,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까지 연결하고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

2024년 3월 상담통계

총 건수 4,496

법률상담 (3,784)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1,026	2,679	74	4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71	39	102

• 인터넷 정보 이용 120,922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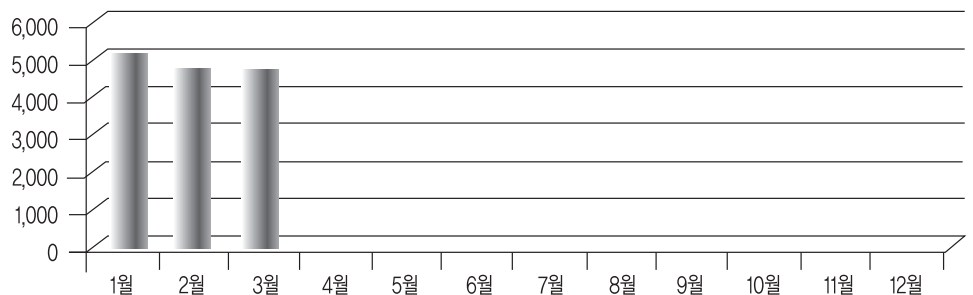
2024년 3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496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784건(84.2%), 화해조정 571건(12.7%), 소장 등 서류작성 39건(0.9%), 소송구조 102건(2.3%)이었다.

법률상담 3,78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2월에 비해 사실혼해소(0.6%→0.7%), 친권·양육권(4.5%→4.7%), 양육비(8.7%→11.5%), 친생자존부(1.4%→1.8%), 유언·상속

(7.4%→7.6%), 가사기타(11.8%→18.0%), 파산(2.7%→2.9%), 개인회생(0.3%→0.6%), 민사기타(0.5%→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78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26건(27.1%), 전화상담 2,679건(70.8%), 인터넷상담 74건(2.0%), 서신상담 4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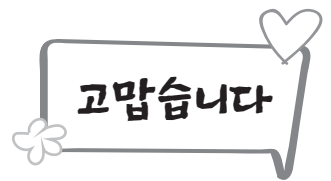
- 3.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
- 김민선 변호사
- 3.25.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교육
애란원 입소자대상
- 조은경 상담위원
- 3.2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
- 박슬기 변호사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3월 1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조정사건을 조정하였다. 14일 법무부 감사회의에 참석하였고, 22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7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한 2024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 연수에서 “가정폭력사건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국민일보와 본소 2023년도 이혼상담 통계 특히 노년이혼상담과 관련하여 인터뷰하였다. 11일부터 13일까지 조은경 상담위원과 함께 2023년도 채용업무에 대하여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았다. 14일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 8호(상담위탁)와 관련 수탁기관 회의에 참석하였고, 22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9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2024년 3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김소이, 김진아, 황미옥 변호사님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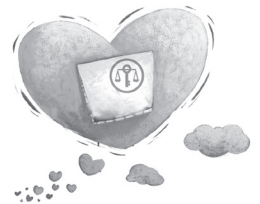
• 대학생 자원봉사

김시현, 남계목, 문세원, 이동희, 강태목, 류제빈, 손예린, 이준호, 김현우, 차서연, 김도윤, 나단비, 신영혜, 이채윤, 정민주, 전성희, 최서연, 최성은, 한승현, 김나현, 이준영, 김미은, 김민재, 김연지, 문다은, 이지민, 한아름, 원서영, 이혜원, 조희서, 하유지, 구가연, 임동현, 김유빈, 김지원, 여예령, 차진희, 최민제, 권순호, 김경은, 손세민, 이지율, 정재경, 길가현, 전서영, 김용평, 노태연, 서동석, 이재영, 장다원, 고유진, 김정민, 김민서, 김소영, 문정현, 서현진, 김창열, 박진희 님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장인복, 김광수, 허영숙,
여상구, 여인화, 여인선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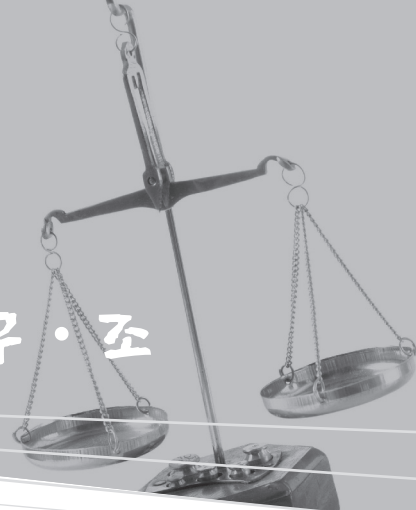
김용현, 이현혜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비를 미지급한 의무자에 대한 감치 결정

법률구조 2023-1-204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권리자(남, 40대)는 의무자(여, 40대)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들을 두었으나 2015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리자가 지정되고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의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권리자는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1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권리자의 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음에도 의무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다시 권리자는 채권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의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그 후 의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리자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 이에 권리자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가정법원 2024. 3. 8.)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경찰서 또는 체포장소 인근 유치장으로 정한다.

건강악화로 채무가 증대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323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카오디오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고합의금과 병원비 등 처리비용을 마련해야 했고 채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어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채무로 충당하여야 했다.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던 중 신청인은 녹내장을 앓게 되었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다. 왼쪽 눈 역시 10여 차례의 수술로 실명은 면했으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중증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직장도 퇴직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형제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형제들이 경제적 위기에 놓이면서 신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고,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평균 7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 중이며, 소득이 워낙 적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인은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친생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어
출생확인 결정

법률구조 2023-1-239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출생확인

내용 : 신청인(여, 30대)은 전 배우자와 이혼신고 전 별거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 사건본인(여, 2세)을 임신하였고, 산부인과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전 배우자가 위와 같은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걱정되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출산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상 '모'에 신청인이 아닌 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고,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임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8.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 000의 출생을 확인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38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였다. 23살이 되던 해에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보증을 잘못 서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신청인 부부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출로 병원비를 충당해야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까지 앓게 되면서 예

전처럼 공장에서 장시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건강이 호전될 때마다 간간히 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살시도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재기를 꿈꾸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이어 나갈 수 없었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3.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3-1-426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40대)는 2003년 채무자(남, 50대)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여, 20대)와 미성년자녀(남, 10대)를 두고 있었으나 2019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60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한 결과 채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장래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23. 12. 14.)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325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목공소, 정비소, 의류공장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함께 의류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와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까지 진단받아 병원비 지출이 커졌고, 역시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재기를 위해 공장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적자에 허덕이다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언 및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3-1-448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피고(여, 40대)와 원고(남, 50대)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0대), 사건본인2(남, 10대), 사건본인3(남, 10세 이하)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생활 내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사건본인들 앞에서도 음담패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는 지역 가족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부부캠프에도 참여하여 부부관계 개선에 힘썼지만 원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

고에게 계속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과 폭언으로 피고와 사건본인들을 괴롭혔다. 피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면장애, 불안장애 등 여러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입소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24. 3. 11.)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5,000,000원을 2024. 3. 11.까지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2024. 3. 31.까지 원고로 변경하여 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가.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2, 3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1의 양육비로 2024. 3.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2, 3의 양육비로 2024. 3.부터 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2, 3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는 사건본인1이 성년이 될 때까지 위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각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4월 22일, 5월 27일, 6월 24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5월 23일	마음이란?
8월 22일	과학으로 본 분노
11월 21일	부부대화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4월 17일	화난 나를 인정하라 : 火解하기① (+인정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 감정케어 센터)
5월 8일	겉절이 화와 묵은지 화 : 火解하기② (+뿌리치료)	
6월 12일	넌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 (+표현치료)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